

제428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6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교육부 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교육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1
  - 교육부 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1
  - 교육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조정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위원회 구성 변경이 있었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준혁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큰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교육부 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교육부 소관

(10시05분)

○소위원장 조정훈 의사일정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 등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의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 역시 이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서로 실시하며 회의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사항과 유형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발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게 결산이기는 하지만 아마 가장 불편한 성격의 회의일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변상부터 징계까지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수치들을 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신속하게 예산 결산을 마쳤으면 하는 위원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숙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한말씀 하시지요.

○**강경숙 위원** 이 결산소위 자료가 어제 거의 자정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 결산심사 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인데 너무 이렇게 요식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오자마자, 상정된 그 다음날 바로 소위가 열리니까 이걸 제대로 볼 시간도 없고 또 보좌진들도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찬찬히 보고, 어쨌든 이게 하루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 뭔가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 것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한들을 조금 여유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장으로서 강경숙 위원님의 발언에 십분 공감하고요. 양당 간사간에 일정을 조절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번 주 교육위가 연차적으로 내일까지 있고 또 목·금에는 주요 양당의 일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결위가 열리는 과정에 저희가 결산소위 입장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숙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금 더 노력해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그리고 행정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교육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실·국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에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은 국가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은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회수·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의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적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총괄 사항입니다.

교육부 총괄 사항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항이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내용입니다.

하단 시정요구사항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투입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여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이미 투입된 예산이 AI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어 6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기관 기관장 임명 관련하여 역사 관련 정책 추진의 중립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이 역사기관의 기관장에 임명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증장애인 생활必需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재 방안을 마련하거나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어서 시정요구유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참고로 전문위원님의 페이지 수가 제가 갖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데, 저는 이게 6페이지거든요. 다 7페이지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군요. 그러면 한 페이지씩만 다르면 제가 빨리빨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 집행 점검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2번, 뉴라이트 인사 역사기관 기관장 임명 배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기관장 임명권자가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부대의견(안)은 ‘교육부는 역사 관련 기관장들이 역사적·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기적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한다’ 이 정도로 저희들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대해서는 고민정·박성준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으로 강경숙·김문수·진

선미 위원께서는 주의로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 제도개선으로 일괄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비율이 1.1%로 더 상향됐는데 올해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특히 입장을 내신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정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2번, 교육부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번,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집행 점검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번, 뉴라이트 인사 역사기관장 임명은 임명권자가 교육부장관이 아니므로 부대의견으로 하자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님 등 위원님들이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문구는 나중에 부대의견 검토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준수 노력 이것은 제도개선 제안하셨는데 강경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숙 위원** 저는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을 지키고는 있는데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를 줄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주의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위원** 저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제도개선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이 목표비율 달성 못한 만큼 다른 예산을 예산 심사에서 깎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교육부, 주의를 받으시고 예산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주의 받으시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수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연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 사항은 소속기관 경비의 본부 전용 문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비를 전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특근매식비를 조정해서 비상임위원의 격려품과 추석 선물에 집행하는 등의 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전용 문제를 조사하여 관련 인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25년 동일하게 전용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와 그 결과 보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이어서 연번 5번 내용입니다.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립대학 안전 인증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데 현재 현행법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대상 교육 시설 중에서 60.7%가 미인증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기한 내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앞에 교육시설 관련된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현행 교육시설법에서 안전통합망을 시선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안전 인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연번 7번 내용입니다.

연번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페이지가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연번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연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연번 8번입니다.

이 부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이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별 사업의 각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에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 요구유형입니다.

다음은 연번 9번입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인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소의 착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는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대부분 각 교육청에 교부하였는데 실제 예산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일부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과 낭비 사례가 지

적되기도 했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4번 소속기관 경비의 본부 전용 문제 개선 필요 관련입니다. 정을호 위원님께서 작년 결산 심사, 이 시기인데요. 24년 8월에 지적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그런데 올해 지금 문제되는 것들은 지적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24년 4월 19일 24년 7월 19일, 이 2건이 있던 게 지금 올해 지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는 교육부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정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정을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정을 하시기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좀 낮춰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적하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다 기관에 통보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하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5번은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학교의 안전인증 완료 필요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좀 제도개선 쪽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6번입니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하면서요.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개하고 조치를 바로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사업의 관리 철저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예산 배분방식 개선과 실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이것도 시정 요구하셨는데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조속한 설립 필요입니다. 이것도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이거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올해부터 본격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차질 없도록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는데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위원님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경비 전용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정을호 위원 질의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조사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 완료하셨다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의원실이 없지요, 여기 보좌진들도?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관련된 거는 정리해서 다시 정을호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아직 보고는 안 하셨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 자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위원님께.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의원실에 보고되어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민주당에서 혹시 어떻게 일을 나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됐다고……

○**김준혁 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정해도 될까요?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학교의 안전인증 완료 필요는 제도개선을 제안하셨는데 고민정·정을호 위원님 주의 하셨고 김용태 위원님 제도개선 하셨지요? 결국 이건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빨리 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이거 언제쯤 완료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직 60%가 인증을 못 받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얘기하면 시설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거는 꽤 중요한데.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정훈** 죄송합니다만 이건 저는 주의를 제안합니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늦추면 안 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팬찮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번,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체계적 관리 및 공개 이건 하시겠다고 하셨고 제도개선……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올해 12월에 공개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12월에 공개 예정이므로 김용태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제안대로 제도개선 수용 가능하실까요?

○**박성준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업의 관리 철저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 국립대학 시설확충 주의 수용하신다고 하셨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주의라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립대학 시설확충이 올해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올해 집행률은…… 시설과장이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말씀하시지요. 이거 하고 다음 8번하고 연동된 건데 시정도 수용하셨기 때문에, 시정의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회수·원상복구 그리고 아마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수용하셨으면 사업 추진방식 변경을 하시겠다는 뜻일 텐데, 맞지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시설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집행률 부분을 계속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집행률 부분도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강화해서 집행률이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좀 더 고려해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좀 고려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집행률을 고려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시정 수용하시고 주의 수용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 26년 예산 검토 전에, 이 26년 예산 배분이 25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를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 방에 다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것으로 시정 내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위원장님, 8번 관련해서 한 말씀만……

○**소위원장 조정훈** 예, 김 위원님.

○**김문수 위원** 제가 알기로 국립대학 시설 확충을 그냥 n분의 1로 무조건 돈을 똑같이 나누어 주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러니 필요성이 전혀 중요하게 적용이 안 되고, 돈을 똑같이 나눠 주니까 그냥 필요한 사람 마음대로 쓰다가 ‘우리는 안 쓰는데’ 이런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나 그런 때는 37개 국립대학의 일부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산출내역을 전부 다 표현해서 자료제출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총액을 일식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실제 예산 배분을 그렇게 안 합니다. 각 대학별로 시설 보유 현황이라든가 학생 수라

든가 노후된 현황, 아까 말씀드린 집행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어쨌든 n분의 1로 나눠 주는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니까……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n분의 1은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구체적으로 포퓰리라고 써 있는 자료의 집행률이, 그 비율의 가중치가 20이잖아요. 이것을 좀 많이 높이셔야 돼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지금 예산 없어서 찔찔매는데 돈 못 쓰는 학교에 계속 돈 줘서 몇 년째 불용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로 알뜰하게 필요한 데에 쓰도록 하십시오.

시정 수용하시지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9번 반도체 공동연구소 조속한 설립 필요, 제도개선을 제안하셨는데 이의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관리·감독 필요, 이 또한 백승아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제도개선 전부 수용하셨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인재정책기획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3번 인재정책기획관 소관은 5개 사항이고 연번 11번부터 15번 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모집인원 대비 등록률이 낮고 협약 기업의 유지취업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떨어져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대학별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과 주의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내용입니다.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연구시설·장비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고 해당 비목의 대학별 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연구시설·장비비에 편중되지 않고 인재양성 목적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을 신속히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연번 13번 내용입니다.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한국대교협에서 기관평가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 기관이 평가를 주도하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평가인증기관의 운영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허위자료 제출이나 형식적인 심사와 같은 부실 운영을 근절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내용입니다.

한국학 진흥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학 진흥 사업이 해외와 국내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과지표를 해외한국학사업 만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국내외 한국학 진흥 및 학산의 성과평가의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조사대상 중에서 11.7%만 참여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내외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만족도 외에 연구실적 활용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내용입니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와 관련하여 결산 기준으로 6개 기관은 장비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고 2차 연도에 계획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한 과제 수행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서 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R&D 장비의 체계적인 운용 및 전담운영인력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현황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도개선으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연번 11번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과 주의로 이렇게 시정요구돼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부터 제도개선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도개선과 주의로 이렇게 갈라지는 사항입니다. 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1차 연도에는 시설장비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해 가면서 연구개발비가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번은 수용입니다.

14번도 수용입니다.

15번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11번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제도개선을 제안하셨고,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는 그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2026년도 예산 검토 전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교육부가 약속한 것들을 다들 꼼꼼히 좀 적어 두시고요.

12번 인재양성 목적에 맞는 사업 예산 활용 필요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26년 예결위 예산 보고 전까지 가능하실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평가인증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제도개선 수용하셨고 이 또한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번 설문조사의 부실을 지적하셨고 굉장히 구체적인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전·김용태·백승아·정을호 위원님 계신데, 백승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백승아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용태 위원님도……

○**김용태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시정요구사항대로 수정하셔서 이 또한 26년 예산 전까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도개선 나온 것들은 일괄해서 쭉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일괄해서 정리해 주시되 26년 예산 검토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리고 15번 인프라고도화 사업은 제도개선을 수용하셨고 다만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제도개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지역인재정책관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지역인재정책관 사항은 연번 16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평가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에 비정년트랙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정년트랙 양산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교육부는 기관평가인증에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등 교원 구성에 대해서 정량평가하는 방향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번 사항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사항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위탁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하여 동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과제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 내용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연구재단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관리운영비에 대한 적정예산 교부 필요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을 수탁기관에 전액 교부함에 따라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책무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6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4주기 기관인증 평가를 26년부터 30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작년 12월에 이렇게 하겠다고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바로 고치기에는 평가의 신뢰성이 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면 비정년트랙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하면서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수용하되 다만 문구는 ‘교육부는 기관평가인증에서 비정년트랙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를 해 주시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이런 것을 유념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정량 지표로 돼 있어서 이것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지만 또 저희들이 정성적인 요인을 평가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비정년트랙을 너무 과잉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고쳐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데 더 용이하겠습니다.

17번은 수용입니다.

18번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16번 전임교원 확보율에 관해 수정 문구 제안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님은 수용하시고요?

○**김문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다른 위원님도 이의 없으면 수정 문구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연구재단 위탁연구 제도개선도 수용하신 거고요.

18번 한국연구재단 사업관리운영비에 대한 예산 교부 가능성은 제도개선을 제안하셨는데 백승아 위원님은 주의를 요청하셨는데요. 어떠십니까?

○**백승아 위원** 저는 제도개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으로 하셔서 제도개선 보고할 때 꼭 포함시켜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고.

전문위원 그러면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소관은 11개 사항인데요.

연번 19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의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청년보좌역 관련하여 근무처를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청년보좌역을 주축으로 청년자문단이 운영됨에 따라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번 20번 사항입니다.

대학창업 활성화 관련하여 청년자문단 운영과 청년인턴 운영 사업은 창업활성화라는 이 세부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다음은 연번 21번 사항으로 한국장학재단 출연 관련 내용입니다.

ICL 이자면제 사업 내 내역사업인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에 대한 이자면제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 의견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 24년도 집행실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추계방식을 개선하고 적절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

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번 내용입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근로장학금의 수요처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집행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장학금 9구간 대상자 인원 증가 규모와 지원단가 인상분, 대학이 제출한 근로 수요를 기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수요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한국재단 및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고 대학이 제출한 사업수요 산출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번 내용입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관련하여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관련 내용인데요. 멘토와 참여 대학 수를 확대했는데 멘티 모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칭률이 낮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멘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다음은 24번 국가장학금의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내용입니다.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위권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저소득층 비율에 비해 2배에 달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효율성 문제도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수혜자 간의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고등교육의 다른 분야 지원 수요와의 균형을 점검하는 한편 국가장학금제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연번 25번입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학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기준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서 학생들이 이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렵고 대학 간 지원의 편차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대학이 II유형의 자체 기준을 공시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금 동결과 연계 방식 된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번 26번 사항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비를 매칭하는 구조로 사업 지원방식을 개편하면서 지방비의 매칭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국비 예산의 실집행률이 연계하여 저조하게 나타냈는데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방비 매칭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다음은 27 연번 내용입니다.

K-MOOC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좌당 수강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강좌 개설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하여 수강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번 28번 사항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반납과 관련된 규

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서 보조금의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번 29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내용입니다.

집행률이 77.9%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장려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규모의 예측 합리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내용이 좀 많네요.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업무를 수행하셔야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9번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의 신뢰 제고 필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20번 세부사업 목적에 따라서 대학창업 활성화 사업, 이거는 별도 예산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인데요. 수용입니다.

21번 추계방식 개선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 홍보 등 사업관리 필요, ICL 이자면제 관련 사항인데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22번 근로장학금 사업 수요 산출 점검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조정훈 위원장님께서는 주의를 주셨고 고민정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으로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특히 조정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올해 사업 할 때 특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근로장학금 사업이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교외 근무가 아무래도 좀 잘 안 나옵니다. 교내를 희망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희망하는 대로 해서 교내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근로시간도 너무 제한하지 말고 기왕 하는 거 한 학생한테 조금 더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근로장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3번입니다. 멘토링 사업 예산 산출방식 현실화 및 적극적인 사업 홍보, 제도개선 요청 하셨는데 수용입니다.

24번 국가장학금 형평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제도개선 요청하신 사항 수용입니다.

25번입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자체 기준 공시를 해야 되고 등록금 연계 방식 재검토 하라는 내용인데요. 교육부도 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사업 지원방식 개편에 따라 지방비 매칭 평생교육바우처 할 때 실적이 저조한데 이거 강화하라는 내용인데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27번 K-MOOC 강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완입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요청하셨는데 K-MOOC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28번입니다. 보조금 반납 시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법령 준수 해서 해야 되고 일부 미흡한 것들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29번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의 규모 산정 합리화 및 사업관리 강화입니다. 정을호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요청하셨는데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19번부터,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의 신뢰 제고, 이게 아마 김건호 청년보좌역 건인데요. 이미 종결됐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 종결됐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연히 바꿨습니다. 교육부 직원이면 아예 이런 데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도개선 이미 됐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세부사업 목적에 따라 별도 예산 편성 필요, 제도개선 수용하셨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이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21번 추계방식 및 사업대상자 사업 홍보 관리, 구체적인 제도개선 요구하셨는데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국가장학금인데요. 제가 계속 질문하고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은 이게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과 제가 말한 게 두 가지는 완전 중요하지만 조금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이거는 나눠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맞았습니다.

백승아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예산을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그 집행 실적이 낮아졌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그것도 일부 맞고요.

저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 학생 또는 9구간 학생들이 지금 60만 명이나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일자리는 3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요처 빨굴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라도 내년 2026년 예산이 꺽이는 상황으로 오해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고.

저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낮추는 것은 수용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가장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정한 노동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건 여러모로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사업 예산 산출방식 현실화 및 적극적인 사업 홍보도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그다음에 홍보 방안, 개선방안 잘 복안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24번 국가장학금 형평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안, 이거 좀 큰 얘기인데요. 이거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이거든요. 국가장학금 형평성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담당 과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 해 주셨는데.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국가장학금 관련해서는 예산이 총 5조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현재 구조 자체는 저소득층에 좀 더 많이 가게 되어 있긴 한데 그 소득분위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원 구간의 형평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쟁점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 구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제도 설계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 백승아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저는 크게 동의합니다. 상위권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저소득층 비율의 2배에 달해요.

이 국가장학금이 수요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우월성, 공부 잘해서 주는 장학금입니까?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그 답변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현재 국가장학금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되는데요. B학점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고요. 다만 지원단가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초·차상위는 전액, 9구간은 100만 원 이렇게 지원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은 우수한 학생한테 준다기보다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 중에서 소득 요건에 따라서 주는 그런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용어라서 저희 행정적 용어로 따지면 소위 말해 기초·차상위부터 전체 10구간을 봤을 때 9구간까지 지금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구간 학생을 보시면 총 200만 학생 중에 한 20만 정도 포괄되시고요. 그 이하 8구간 학생이 총 100만에 해당합니다.

즉 200만 학생 중에서 한 120만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위 말해 중위소득 이하, 즉 전체 학생 중에서 반 정도 이하 되는 소득의 학생들이 대부분 이 장학금을 3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장학금 9구간·10구간 이 개념하고 우리가 일반 복지 통계에서 말하는 소득분위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집이 있거나 맞벌이 부모님만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구간은 9구간·10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중간층 정도 된답니다. 한번 그런 것도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그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자금 지원 구간을 총 10구간으로 나누고 통계청, 소위 말해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10분위·9분위 이렇게 얘기할 때 통계청 분위를 많이 쓰시는데요. 똑같이 10분위로 나뉘다 보니까 학자금 지원 9구간이 그 통계청의 9분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

는 경향치가 있습니다만 사실 학자금 지원 구간상 9구간은 통계청 분위상에 따르면 한 6분위 정도 됩니다.

즉 전체 100명을 쭉 소득 구간별로 봤을 때 한 100명 중에서 60번째 정도 되는 그런 소득층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평균보다 높으니까 고소득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소위 말하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이런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고 그거에 있어서 약간 혼동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면 구간 개념을 바꾸나요, 앞으로? 똑같이 써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5구간으로 한다든가 가·나·다로 한다든가 이렇게……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저도 애 둘을 대학을 졸업시켰는데 제가 지금은 집이 없는데 그때는 집이 있었어요. 집도 비싼 집도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저도 애들 둘 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았는데 저보다 훨씬 부자들도 다 받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수용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말은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제도 때문에 못 받는 게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어제도 제가 우리 전체회의 때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만 II 유형의 문제점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게 대략 한 160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잘 좀 조정해서 I 유형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김문수·김준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또 한 가지는 과연 국가는 누구에게 장학금을 주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아까 기준 학점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B?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B학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D요, B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B학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지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가장 어려운 학생, 거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80%까지 주신다고 그랬나요? 그 학생은 나머지 20%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을 가능성성이 큅니다. 그러다가 빼끗해서 C<sup>+</sup>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학을 입학했는데 여러모로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고시나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학의 전공대로 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가장 어려운 학생들 순으로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됩니까?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기초차상위 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B학점 이상인데 기초차상위 학생 같은 경우는 C 학점까지로 조금 낮춰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예를

들어 기초차상위 학생 중에서 C학점 미만이라서 지원을 했지만 못 받는 학생들도 저희 데이터상으로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맞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많은 대학에서 서구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들도 이제 장학금을 성적장학금에서 필요장학금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고 저는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 국가가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부터 돋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C도 못 받냐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정에 따라 다른 겁니다. C를 못 받는다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이력, 다른 직장 또는 다른 진로를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도 좀 감안해서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안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그러면 구간 산정 방식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좀 공감이 되는 면이 있네요. 성적 B학점 이하만 못 받는다고 하시니까 어떤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이 정말 필요할지 다양한 요인 좀 많이 고민하셔서 제도개선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대해서 김준혁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백승아 위원님 제도개선 요구하셨는데 수용하신 거지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26번, 사업 지원 방식 개편에 따라 평생교육바우처가 지방자치 매칭이 부족한데 제도개선 요구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 좀 더 내라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과장이 조금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좀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난해 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법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17개 지자체 중에서 14개 지자체가 조례로 지방비 30%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개 시도도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왜 지방비 매칭이 필요합니까, 평생교육시키는 데?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평생교육시설인데 이게 지역 주민에게 맞는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자체장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 차원이 국가사업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어쨌든 이런 지방비 매칭 실적 저조 현상이 지금 꾸준하게 지속되

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답을 찾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아마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제도개선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K-MOOC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셨고 어제 김대식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8번 지역 평생교육 보조금 반납 시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반납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네요? 이건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미정산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는데요. 연내에 정산 완료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가 자료를 봤는데 계속 뭐라 그럴까, 계속 반복되던데요, 특정 지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수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화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소위원장 조정훈** 페널티를 좀 줄 수 없습니까? 아니,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다 업무 파악 중이다 이러면서 몇 년째 미루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반 개인이 그랬으면 감옥 가요. 어제 유치원 정리했지 않습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벌금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제도개선 수용하면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기억하고 있다가 26년 예산편성 시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규모, 제도개선 구체적으로 정을호 위원님 제안하셨는데 수용하신 거지요?

이상으로 넘어가고 6번 의대교육지원……

지금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게 한 85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 한 30개 정도 왔고 잘하면 12시 반内外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 1시 안에만 끝내 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쯤에서 아마 운영의 지혜를,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2시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안 1시까지 달려서 마무리하고 끝낸다, 점심을 좀 늦추고. 또는 정회를 하고 2시에 모여서 정리한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교육부는 둘 다 가능하신 거지요? 오늘 일정은 다 비우신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준혁 위원** 1시까지 어쨌든 계속하고 끝나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하시고……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으려고. 박성준 위원님은 1시까지 끝내는 게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박성준 위원** 제가 운영의 미를 말씀드리면 교육부하고 큰 문제점이 없는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딱 체크하고,

그러면 신속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행이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보다는 쟁점되는 부분만 딱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신속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소위원장 조정훈** 그건 제가 최소한 한번 더 효율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렇게 진행해서 12시가 됐든 12시 반이 됐든 끝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준혁 위원님이 시간이 좀 그러시니까.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김용태 위원님도 팬찮으십니까?

○**김용태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 교육부도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의대교육지원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의대교육지원관 30번 연변 사항입니다.

국립대병원 지원과 관련하여 40개 내역사업 중에 12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0%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주의, 징계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31번입니다.

국립대병원 지원과 관련하여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병원 선정 개수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32 연번입니다.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30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 필요 등 관련입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정 갈등으로 병원의 재정 악화로 상당히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충분히 양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 시설비는 국고보조금인데 왜 제대로 지침에 따라서 안 했냐라는 게 위원장님 지적이신데 시설비는 지금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항목이. 그래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적용받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조금 같았으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1차 교부하고 집행되는 것을 봐서 2차 교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 조항의 적용은 받지 않고요.

그래도 출연금이라도 이렇게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면 사실은 직원들이 교부를 미룬다든가 덜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 주의 의무 위반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의대 문제로 상당히 담당 직원들은 고생을 엄청 많이 했고요. 교육부에서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과가 의대 담당 부서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했던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징계만은 안 해 주시고 제도개선으로 요청하시면, 또

이런 일이야 설마 있겠습니까, 이게?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번에 대해서는 주의도 있고 제도개선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활성화 방안 필요인데요.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인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 저희들이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저희한테 주시는 게 상당히 좀 어렵게 고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공공의료 강화라는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좀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30번, 의대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 중에 전체 사업은 54%이고 40개 사업 중의 12개는 실제 집행률이 0입니다. 물론 출연금이라 법적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앙 부서에서 보조금과 출연금을 내릴 때는 두 번 또는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실집행률을 보고 하반기에 조정을 해서 예상 집행률 및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게 기본인데 이 경우는 그것을 전혀 따르지 않으셔 가지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의 불용이 났습니다.

물론 전 정부, 그 당시 저는 여당이어서 압박이 있었다 상황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담당자였다면 또는 관할 부서였다면 당연히 할부로 나누어서 집행을 보면서 해서 더 많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이건 솔직히 담당자가 네글리전스(negligence), 과실이에요. 이것을 저는 아무리 바쁘다고 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에 바쁘셨겠지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징계가 공무원상 굉장히 큰 피해가 있다면 저는 시정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국립대병원 시설 지원하시는데 절대로 한번에 다 금액 쏴 주시지 마십시오.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정으로, 시정은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이거든요. 그건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담당 과장이 나와 있는데 조금 부가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가 앞에 두고도 쓴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 ○교육부의대교육기반과장 윤혜준 의대교육기반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취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집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번에 다 교부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그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연내에 한 아홉 번 정도 나누어서 교부를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언제 집행교부를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한번에 내려준 것은 맞고요.

이게 40개 내역사업이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집행 상황을 하나하나 서면으로는 체크하고 계속 관리는 하지만 내역사업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교부 시기를 결정하는 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집행 실적과 이런 것들을 현장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국립대병원 지원비가 예산이 얼마 짜리입니까?

○**교육부의대교육기반과장 윤혜준** 올해,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는 1113억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문구를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수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주의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준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내용은 잘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의대 관련해서 지난 청문회 때 국감 때도 계속 질의하고 해서 큰 상황 속에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요. 사실 저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좀 크게 이야기하자면 또 더군다나 실무자가 더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정책적 혼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무자들의 고충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대폭 양해를 해 주셔서 제도개선 수준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면 교육부도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준혁 위원**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위원장님 존경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주의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주의는 수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산 불용에 대한,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출연금도 집행 실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하셔서 다음 실무자가 오셔도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요구드립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31번 주의 제도개선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공공임상교수제 활용 방안, 제도개선 제의하셨지요, 주의 대신?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이것 어떻게 할까요?

○**김용태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율이 낮아 가지고 그런 거니까.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지원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입장이신데 그

려면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교육자치안전정책관 11개 사항이 있는데요.

33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학생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내용입니다.

이어서 3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4, 35, 36, 37 관련 사항은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의 불용 관련된 사항으로 34 연번은 불용처리 절차상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정 사항입니다.

35 연번은 세수결손 및 세수추계 오차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36 연번은 지방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37 연번은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대응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재정교부금 예상금과 확정금의 추계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연번 38번은 지역현안특별교부금 관련 사항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정 요구유형이 되겠습니다.

39 연번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및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40 연번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법적 근거가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 미흡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고등교육 및 RISE사업 연계 과제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고등교육 연계 과제는 별도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41 연번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6개 특구에 대규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사업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 운용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학교시설 신·증축이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범사업의 교부 방식을 재검토하고 범위와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내용입니다.

42 연번은 국가시책특별교부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부 중심의 국가시책사업심의회에서 이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과 현장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고 국회나 외부의 실질적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 평가가 25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백승아 위원은 시정 내용을, 서지영 위원님과 정을호 위원님은 제도개선 내용을 제시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심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국회 보고 절차를 도입하여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3 번입니다.

이 내용 역시 국가시책특별교부금 관련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동일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다수의 사업이 3년을 초과해 시행되고 있고, 3년 이상 연속 지원된 사업의 비율이 전체 127개 중 60%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예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거나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2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큰 꼭지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33번,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산정 시 학생 수 기준을 고려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 주셨고 교육부에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의 절차상 문제점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 요구하셨는데,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사항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35번입니다. 세수결손 및 세수추계 오차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안정 방안 필요입니다.

정을호 위원님이 제도개선 요청하셨는데 수용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 논의 필요 사항입니다.

김민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대응계획 마련 필요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일이고요. 진선미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요청하셨는데 수용입니다.

38번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적절하나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셨는데 수용입니다.

39번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입니다.

김문수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법적 근거 반드시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용입니다.

40번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 용도 일탈 점검 필요입니다.

정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41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범위 및 규모 적정 수준 조정 필요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수용입니다.

42번,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백승아 위원님께서는 시·도교육청 및 현장 전문가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에 참석하라 이런 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기존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위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걸 거의 2배로 늘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단위학교장, 교육감협의회 추천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승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아래의 서지영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과

같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국가시책 사업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관리 강화 및 정비 필요입니다.

정율호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너무, 계속 3년 이상 한다 그런 내용인데 시정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수용하셨고, 특히 교부금 시 학생 수 기준이 있는데 학생 수의 가중치를 높이라는 건데요. 어제 차관 얘기한 것처럼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한번 재조정이 필요해서, 아마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교부금 배분 공식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과밀도 문제지 않습니까? 과밀, 큰 도시. 저희 같은 농촌 지역은 과소 학급인데, 과목이 12개인데 학생이 8명밖에 안 되다 보니 두 과목을 가르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농촌을 그나마 유지하고 농사를 짓는 젊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두 과목씩 자기 자녀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이 지금 완전히 소멸되는 데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데는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만 저희들같은 농촌지역은 학생 수로 해 버리면 더 예산을 줄여 가지고, 선생님 그나마 몇 명 있는 것도 더 줄여서 한 선생님이 세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무조건 학생 수로 줄여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과소, 과밀을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안을……

기조실장님,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죄송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과소 학급 이런 데를 무조건 학생 수로 줄여 버리면 큰일 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방식을……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고차방정식인데요.

○김문수 위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고차방정식입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해야 되고 저쪽은 저쪽대로 해야 되고.

○김문수 위원 그렇게 두 가지 다 별도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손 드는 순간 그 말씀 하시리라 짐작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교부금 산정 기준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34번도 수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래서 지금 33, 34, 35, 36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연관돼 있고 37 까지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요구, 제도개선이 있는데요. 이게 좀 중복되는 제안들이 있어서 전문위원 제안은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한 두 가지 정도로, 교부금 공식을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교육 예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최종안은 마지막에 의결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재정 담론이 끝났고, 38번 교육발전특구인데요. 이 교육발전특구에서 고민 정 위원 수정하셨고 김문수 위원님 제도개선 하셨는데 실장도 하고 싶다고 하신 게, 이게 라이즈 관련된 법안입니다.

○**김문수 위원** 저희가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 이미 상정돼 있고요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때 라이즈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나머지 시정, 제도개선안은 다 수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교육부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39항, 김문수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교육부는 필요 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여기는 괜찮고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성과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법을 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시행령상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실하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저희가 문구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이렇게 받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수용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시정 문구 수용하는 것으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관련된 것은 제도개선 다 하셨고 다 넘어가고.

42번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 관리 강화 필요인데 백승아 위원님은 시정 요구하셨지만 시정 요구한 사항이 이미 완료됐다라는 교육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3번 시정요구사항인데 ‘2주 이내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것은 빼고 국회에 보고하실 때 다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넘어가서 영유아정책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영유아정책국 9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연번 44번 관련 사항입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45번, 유아 사교육비 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유아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사교육비 조사가 시험조사에 해당하고 공표 대상이 아니라 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6번,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47 연번도 시간제보육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합반 확충에 따른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48 연번입니다.

어린이집의 확충 실집행률이 55.8% 수준으로 연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 있습니다.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교육부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목표 물량을 과다 추계해 매년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단가 개선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유보통합에 따른 중장기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어서 연번 49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방지를 위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다음 내용은 50번 내용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처우개선비가 반영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성격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유보통합으로 교육부 이관으로 2개 사업이 혼재된 점은 이해가 되지만 분리 편성했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지원 예산이 여러 곳에 편성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1번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유보통합 대안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장 반발로 통합모델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재정 추계, 이관 방식, 국비 추가 투입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52 연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내용인데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재정 분담, 특별회계 신설 등 주요 사항을 정책참여자·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논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44번,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45번,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필요, 제도 개선 수용입니다.

46번,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불균형 해소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47번, 시간제보육 통합반 확충에 따른 이용률 제고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48번,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 필요입니다.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는 현실성이 부족해서 이미 수정을 한 상태고요. 또 기타 유보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제도개선으로 좀 일괄해서 해 주시면, 앞으로 이게 유보통합과 다 관계가 있고 어린이집 이것을 어떻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비를 해 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제도개선으로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49번입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50번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의 편성 방안 검토입니다. 이것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51번, 합리적인 유보통합 대안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52번입니다. 유보통합 재원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특별회계도 연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 입법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유보통합, 결국 유보통합 3법을 통과하는 문제하고 이게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발언이 없으면 44번, 45번, 46번, 47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8번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시정·주의·제도개선, 같은 요구사항에 요구 단계가 다

른 데요.

강경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숙 위원** 이것이 교육부로 이관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고 대책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설 수요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적시에 공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매년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률이 낮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도개선 사항이면 저도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세워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형을?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강경숙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예, 그러면 김민전 위원도 계시지만 제도개선으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49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제도개선, 50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김용태 위원** 49번 잠깐만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몇 번이십니까?

○**김용태 위원** 49번이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김용태 위원** 은평구하고 경남 김해시는 왜 집행률이 0%일까요? 그 해당 지자체 문제인 것인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으로 22년부터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에 주고 지방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에서는 모든 게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공개 경쟁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접수하고 이러는 동안에 시간이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좌지우지하는, 지방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기준보조율이 20%인데 왜 50%의 국고보조율을 은평구에 하게 된 거예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도 거기까지 모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것까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체크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주의 주시고, 다만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50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제도개선, 51번 합리적인 유보통합 대안 마련, 결국 이게 유

보 3법하고 다 연관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52번 유보통합 재원 체계에 대한 전반적 마련을 정을호 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셨는데 제도개선 제안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적 방향과 법률을 만들어야 돼서 제도개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박성준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준혁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제도개선 수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번 글로벌교육기획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글로벌교육기획관 관련해서는 2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연번 53번은 재외한국교육원 관련 내용으로 설치 기준은 1만 명 이상인 재외동포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지역이 1만 명이 안 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은 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한국교육원을 인근의 한국교육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54번은 재외한국학교 국고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16개국에 34개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고 지원 비율이 각각 상이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고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고 장기적으로 전액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53번 재외한국교육원 일부 통·폐합 검토 필요입니다.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은 수용합니다마는 다만 시정요구사항의 문구 하나만 고쳐 주십시오. 드리고 싶습니다. 맨 끝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반드시 1만 명 안 되면 한국교육원이 없어지거나 그런 오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는 다른 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데는 당연히 통·폐합해서 해야 되는데,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원은 계속 신설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이 안 되어도 꼭 필요한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립니다.

54번입니다. 재외한국학교 국고 지원 비율 상향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정훈 예, 김 위원님.

○김준혁 위원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국회에서 의원외교로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그전에는 심양에 가서 한국학교를 방문했었을 때 너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교장 선생님이 참 굉장히 애탏 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제가 몽골 갔을 때 느꼈던 것은 몽골이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전진기지인데 그 교민들이 각자 한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자비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월급도 없이 정말 고생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약속을 한 것이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법적 근거가 좀 애매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공식적 한국학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교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이 굉장히 난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제도개선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저는 정말 우리의 K-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고 교포들 내부에서도 자부심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나중에 따로 또 한번 실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저도 김준혁 위원님의 발언 큰 틀에서 동의가 되고요. 1만 명 미만이라고 한국교육원을 없앤다라는 것은 저도 해외 생활을 오래해 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결정 같습니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더 살리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지요.

그래서 제안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보다 ‘1만 명 미만의 국가 또는 도시의 한국교육원 활동을 어떻게 할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이 정도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좋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몽골을 한 열다섯 번 정도 갔어요. 지금 현재 아주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몽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원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각각 해서, 우리도 물론 세종학당이 있지만 중국은 공자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공자학당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라도 더 늘렸으면 늘렸지 그것을 줄이는 그런 정책은, 왜 마이너스 정책을 씁니까? 플러스 정책을 써야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위원** 한국교육원이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반대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재외동포 수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재외동포가 없는 지역에서,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문화라든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군요. 한국교육원이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한국문화도 전파하는데 굳이 이 설치 기준을 교민 기준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김준혁 위원** 문화원이 있고 교육원이 있고 양립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이지만 저는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내셨기 때문에 발언을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교육원이 거꾸로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통·폐합’이라는 어휘 빼시고……

○**전문위원 윤상열** 예, 한번 따로 교육부와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재외동포 수가 적은 지역에 한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좋습니다.

○**김용태 위원**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김용태 위원** 개인적으로 다른 질문인데요. 한국교육원 설치할 때 보통, 김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에 한국문화원이 있으면 같은 건물에 만들어서 임차료 같은 것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대사관에서 우리 공관이라든지 교육원·문화원을 좀 한 곳에 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교육원·문화원 나눠 있으면 그 예산이 다 각각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국고에서 좀……

○**교육부재외교육지원담당관 김주영**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김주영입니다.

해외 한국문화원은 현재 35개가 설치되어 있고 한국교육원은 4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이나 국가에 반드시 겹쳐서 설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교육원 같은 경우는 공관의 부속시설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관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 별도의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교육원을 설립했다기보다는 60년대, 70년대에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 민단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설치된 교육원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민단에서 무상으로 건물을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53번 제도개선, 수정안으로 마무리하고요. 54번 제도개선 수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반대로 재외한국학교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시키자라는 제안이시고요 이의 없습니다.

10번 디지털교육기획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디지털교육기획관 관련해서는 8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연번 55번은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실효성이 불명확하고 사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증액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효과성 활용도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주의 의견입니다.

연번 56번은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지원 성과 조사와 관련해서 해당 조사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사업의 효과성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실증 지원 성과 조사 응답률을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연번 57번은 에듀테크 소프트랩 주관·운영기관 선정 시에 사업 수요 및 중요도, 지방비 매칭의 한계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그리고 에듀테크 소프트랩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에듀테크의 정보 제공·활용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연번 58번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크고 일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집행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실효성 없고 일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의견입니다.

연번 59번은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별로 배치 현황에 편차가 나타나고 전문적인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연수 등을 지원하며 필요한 학교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연번 60번은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실집행률이 70.3%에 불과해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AIDT 사용 불편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연번 61번은 특별교부금 위탁사업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위탁사업비 비중보다 좀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위탁사업비 최소화 기준을 수립해서 교부운용 기준에 반영하고 성과평가를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입니다.

연번 62번은 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진단 및 조치 관련해서 교육부가 교육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수준을 진단해서 점검하고 있으나 그 수준 진단 결과와 실제 보호 수준 등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반영하는 진단을 적기에 진행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55번, 에듀테크 소프트랩 이 사업 편성이 너무 과다 편성돼 있다는 백승아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24년에 96억 원으로 많이 증액돼서 일부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교육부도 그런 판단을 해서 24년도 17억 감한 79억 원이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이제 곧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34억 원으로 대폭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좀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백승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 드립니다.

56번입니다.

실증 지원 성과 조사의 응답률 제고 및 개선 이것도 역시 에듀테크 소프트랩 관련된 말씀인데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57번, 에듀테크 정보 제공·활용의 지역격차 최소화 노력 필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58번, 교원연수 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개선 필요입니다. 이거는 백승아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셨는데 24년 연수 참여 교원 대상 효과성 분석 같은 거 해 보면 만족도도 높고 사실은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시정이라고 해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59번입니다.

디지털튜터 배치·운영의 적정성 제고 필요입니다. 이것은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구분되는데 같은 사안으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 드립니다.

60번입니다.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 사업 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의하고 제

도개선으로 갈리는데 교육부는 제도개선으로 건의말씀 올립니다.

61번입니다.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입니다. 24년에 전국 단위 연수 운영 처음에 기반 마련하면서 위탁사업비가 KERIS나 과학창의재단으로, 많이 하느라고 처음에 비중이 높았습니다마는 25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쳐 나가고 있으니까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기를 김문수 위원님께 건의말씀 드립니다.

62번입니다.

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진단 및 조치 개선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5번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이 96억에서 70억, 이제 30억까지 줄어서 제도개선으로 수정 요구하셨는데요.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수용하시는 거고요.

56번, 수용하셨고요.

57번, 수용하셨고요.

58번, 백승아 위원님 교원연수 사업 시정 요구하셨는데 해명을 들으셨습니다. 입장 주시지요.

○**백승아 위원** 이것은 제가 바로 수용이 안 되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교사들 설문과는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과장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이혜진** 저희가 24년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에 참여한 교사 대상으로 연수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5점 만점에 4.46점의 점수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전·사후 역량 향상도를 비교해 봤을 때 사전에 3.3점 정도였다가 연수 이후에 역량이 4.2점 정도로 나타나는 식으로, 저희 연수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의 역량 향상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이거 국감 때도 그렇고 현안질의 때도 수없이 많이 질의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도 없었지요. AI 기능도 없는 AIDT였지요. 그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쓴 부분, 비용 사용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초호화 식사대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몇 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모자란다 국고도 모자란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초호화 연수, 게다가 AI 기능도 없는 AIDT 연수, 다시는 이런 기획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앞으로 교훈 삼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정 고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토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저도 좀 의견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 시정의 적용 기준이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면 사업추진방식 변경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AIDT 사업이 교원연수 사업의 효과성이고 두 번째는 이걸 집행하면서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화성 예산 낭비가 있었느냐 그건데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는 실은 AIDT가 교과서로 추진이 되었고 교과서에 대한 연수를 하셨고, 제가 설문조사 방법론을 꼼꼼히 보지는 않았지만 설문조사 자체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효과성 문제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뭐랄까 예산을 적게 들여서 이 AIDT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백승아 위원님에게 충분히 지적할 수 있으시다고 봅니다.

○**백승아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7월에 전국 초중고 교원 대상으로 AIDT 학교 현장 실태조사도 했어요. 이 조사에서는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효성에 대해서 교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평가를 냈는데 수치 말씀드리면 연수 참여한 교원 75.7% 중에 61%가 연수가 유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위원장 조정훈** 하여튼 여러 가지 설문 등등이 있으니 제도개선을 제안하셨고 시정을 제안하셨는데 위원장으로 혹시 중재를 해 보면 주의 정도로,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을 경우 주의거든요.

그래서 주의는 어떠십니까,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특히 호화 연수는 자제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당연히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환수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새 정부 1호 감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 아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거기서도 나오면 당연히 그것은 필요한 조치를 받을 겁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 결과가 나오면 더 추가 조치를 하고,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주의 수용해서 시정요구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똑같은 시정요구사항이지만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동의해 주시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0번도 같은 시정요구사항인데, 백승아 위원님 어떠십니까?

○**백승아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수용하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조정훈**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셨고요.

61번 위탁사업인데, 김문수 위원님 이석하셨는데, 당해 시작할 때는 위탁사업 비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25%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 소위원장 조정훈** 25% 수준이면 다른 국가시책 특교 비중 정도하고 어떻습니까?
-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더 낮습니다, 오히려.
- 소위원장 조정훈** 평균보다 내려갔습니까?
-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다음부터 위탁사업 비중을 높일 때는 좀 더 신중하라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가면 어떨까요?
- 김준혁 위원** 제가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조정훈**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62번, 제도개선 수용하셨습니다.
- 이렇게 마무리하고.
- 11번 책임교육정책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윤상열** 책임교육정책관 관련해서는 총 6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연번 63번은 교과용도서 우수 사례 발굴·확산,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역사업에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 없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근거 없이 민간위탁사업비를 집행한 사유와 해당 사업 수행 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 방안을 마련·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며 관련자를 정계할 것이라는 정계 의견과 민간위탁사업의 법령상 근거 정비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제도개선 의견 각각 있습니다.
- 연번 64번은 교과용 검정 체계 정비 관련해서 검정 과정에 혼란이 있고 부실 검정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작자 제한 요건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안내자료와 공고 간 불일치를 시정하며 검정 신청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 연번 65번은 국가영재교육원 종단연구 관련 내용으로 연구 대상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 연번 66번은 학사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동 시스템의 기능 부족 및 사용 불편으로 현장 활용이 저조하고 상당수 학교가 사설 시스템을 병행하거나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기능 개선과 성과 검증을 제도화하고 사설 업체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공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 연번 67번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결원 관련해 가지고 정년퇴직 인원의 선제적 채용공고를 통해 결원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 제도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연구직 이탈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 연번 68번은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이 국회에 보고한 사업과 다르게 이용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한 목적과 달리 집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의견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63번,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의 근거 마련 필요, 교과용도서 개발 관련입니다.

정을호 위원님께서는 징계, 고민정 위원님께서는 주의, 김문수·백승아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 각각 요구하셨습니다. 정을호 위원님께 징계 관련해서 담당 과장이 의원실에 찾아가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거는 시정으로 낮춰 주시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그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법령 근거도 조속하게 마련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번입니다.

교과용도서 검정 체계 정비 및 부실 검정 시정 필요입니다. 시정과 제도개선 각각 요구하셨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건의 올리겠습니다.

65번입니다.

국가영재교육원 종단연구 참여 독려 방안 마련입니다. 강경숙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요구하셨는데 수용하겠습니다.

학사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사설 업체 의존 최소화입니다. 정을호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요구하셨는데 수용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결원 및 업무 공백 최소화입니다. 고민정 위원께서는 주의, 김민전·김용태·백승아 위원께서는 제도개선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선제적으로 정년퇴직하기 전에 채용공고를 빨리하는 등 조치를 해서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입니다. 이거는 독도주권 연구 예산으로 해서 현지 답사 갔다 온 건데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님 시정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근거는, 법적 근거 마련이 없이 집행한 거는 시정돼야 되겠지요. 징계 수준으로 시정을 수용하셨으니 나머지는 다 정리해서 시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용도서 검정 체계 정비에 관해서도 제도개선 제안 주셨는데, 백승아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백승아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65번,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66번, 학사관리시스템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67번, 동북아역사재단 결원과 관련해서 주의와 제도개선이 똑같은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처우 개선 제도개선한다고 하시니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제가 이쪽 관련된 전공자이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개선하는 건 잘하신 거고요. 추가로 국사편찬위원회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보통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교수님들이 정년 하시면 그때 가서 뽑고 막 이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공도 약간 또 다른 분을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두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에 부합해서 동시에 같이 제도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준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하셔서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68번 독도주권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백승아 위원님 시정 요구 수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12번, 교원학부모지원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교원학부모지원관 관련해서는 총 5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연번 69번 사항은 정부가 점차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학생 맞춤교육, 통합지원,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직원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70번은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과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이 일부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유사한 내역 사업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연번 71번은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과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에 실시된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해서 추후 필요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연번 72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6차 연금재정장기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연번 73번은 원래 퇴직수당 지급 비용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일시적·예외적 조치인데 사용주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퇴직수당 비용 부담 지속 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정율호 위원님은 시정 의견을 밝히셨다가 주의로 내리시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 외에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69번입니다. 교직원 정원 확보 방안 마련,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70번, 유사 내역 사업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71번, 교원양성기관 개선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72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73번입니다. 퇴직수당 급여부담금 지원체계 개선 필요입니다. 주의가 정을호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세 분이고 고민정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 의견 주셨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번, 교직원 관련해서 김문수 위원님이 적절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교직원 수를 무조건 방어하는 것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정 교직원 수와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수요와 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밀히 협력하여 교직원 정원 확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 숫자를 지키겠다 그러면 아마 방어하기 어려운 논리가 될 테니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교직원의 숫자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70번 제도개선 수용하셨고, 71번 수용하셨고.

72번은 주의와 제도개선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도개선으로 합니다만 이건 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학연금기금이 지금 고갈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49년에서 42년, 7년 차가 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전문기관들에서 이렇게 7년씩이나 연금 고갈 기한의 편차가 넓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방법론이나 현실적인 안을 만드셔 가지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고 개인적으로도 국정감사 때 계속 지적할 예정입니다. 사학연금기금에도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엉터리로 하려면 전문성을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73번, 퇴직수당 급여에 대해서는 주의, 주의, 제도개선인데요. 주의로 할까요, 그러면? 주의가 더 많으셔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담당과장이 조금 설명을 하나 올릴 게 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위원장님, 정을호 위원님이 좀 전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낮추겠다고 공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습니까, 정을호 위원님?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지금 의원님실 찾아뵙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를 해 주셔서 내용을 조금,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해 주시겠다고 의견을 주시길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도 설명 들으셨습니까?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예. 지금 사학연금공단의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퇴직수당은 부담 주체가 사립의 초중고 교직원은 100% 국가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직원 같은 경우는 대학법인이 40% 국가가 6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대학병원은 100% 대학법인 즉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부담 중에서 대학 교직원 초중고 교직원 중에 공단이 연 236억 고정액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학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 원칙이 필요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었고요.

저희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다만 사학재단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어떻게 부담 주체를 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저희가 일단 일부 수용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일단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입장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그러면 그 제도를 개선을 해서 보고를 좀 주시겠어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실행 전에.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예.

○**백승아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도개선 수용하십니까?

○**백승아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사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관련해서는 1개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메타버스 체험관이 정식 운영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유지보수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교육부의 노력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향후 낭비를 막기 위해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일회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의견과 주의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기부, 메타버스 체험관이라는 거는 무슨 실물이 있는 건 아니고 창의재단 홈페이지의 가장 체험관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23년에 2억 3000만 원 들인 다음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님께서는 시정 요구하셨고 고민정 위원님·정을호 위원님께서 주의 요구하셨는데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이런 식의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런 사업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의원실에서 사전에 보고 받았고요.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주의 수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건강정책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학생건강정책국 관련해서는 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연번 75번은 교육급여 관련해서 바우처 형태로 전환되면서 절차가 2단계 절차가 되면서 인원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신청 절차 간소화 및 1단계 교육급여 신청자 중 2단계 바우처 신청을 누락한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연번 76번은 학생정신건강지원강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간접적인 측면의 연수나 교육 자료 개발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실제 학생의 건강 증진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별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수정하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연번 77번은 학생정신건강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이 별도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조금의 형태는 1·2회로 나눠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회에 걸쳐 전액을 교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2회 이상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연번 78번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특례규정의 일몰 후 재원 마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75번, 교육급여 실집행률 개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주의하고 제도개선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6번, 학생정신건강지원강화 사업 사업 방식 변경 및 성과관리 개선입니다. 이것도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나눠지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성과지표도 다시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77번입니다. 학생정신건강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제고입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합리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리하겠습니다.

75번 교육급여 실집행률 개선 방안은 같은 내용이니 제도개선, 또 성격상 제도개선이 적절해 보입니다.

76번 학생정신건강지원 사업은 성과지표를 도입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도개선하시되 성과지표를 교육부가 좀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지적하겠지만 부처별 성과 그다음에 프로그램별 성과, 사업별 성과지표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건설 건설으로 그리고 지표도 없는 게 너무너무 많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가시고 수정해 주시고요. 77번 제도개선, 78번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속기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사편찬위원회 진행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국사편찬위원회 관련해서는 연번 79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사업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세목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적

절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하고 세목 조정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번 80번은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시스템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ISP는 수립을 했는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사업이 적기에 실현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보화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ISP 수립 결과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79번, 연례적인 세목 조정을 통한 집행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고민정 위원께서 주의 백승아 위원께서 제도개선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에는 23억 증액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한국사능력검증 시스템고도화 사업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지적인데요 26년 정부 예산안에 15억 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백승아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방금 79번 말씀하시면서 지금 지적된 문제는 세목 조정의 규모가 크다는데 답변을 하실 때 이십몇억을 추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게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세목 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를 이번에……

○**소위원장 조정훈** 현실화시켰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이게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지적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25년도 세목 조정을 했군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요, 26년 예산에.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25년도 세목 조정이 이 정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거 이렇게 자꾸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국회 예산권에 대한 침해예요, 이거는.

○**국사편찬위원회역사진흥실장 이동현** 저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예산들이 수입대체경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본예산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소요된 예산은 약 8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에게 처음에 배정된 예산은 64억 정도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에는 애초부터 용역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목 조정을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소위원장 조정훈**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시정하시라고요.

○국사편찬위원회역사진흥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사와 관련해서 이것 조금 제도개선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못 땐 것 아닙니까? ISP까지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지요?

○국사편찬위원회역사진흥실장 이동현 예, 작년에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소위원장 조정훈 그것을 국사편찬위원회의 책임으로 해야 될지, 예산을 안 준 교육부의 책임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작년에는 미쳐 못 담아서 내년 예산안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이 되면 시정요구의 대상은 국사편찬위원회입니까, 교육부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것은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 대상 시정요구사항이니까 일단 거기인데 교육부가 책임 없다고 할 수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를 혼냅니까, 이것 돈 안 준 교육부가 혼나야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속기관 예산은 기재부에 교육부하고 소속기관이 같이 갑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래요? 국사편찬위원회 억울하지 않으세요, 시정요구 받으시는 것?

○국사편찬위원회역사진흥실장 이동현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특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 지적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진행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국립특수교육원 관련해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관련해서 1차 보조금 교부와 2차 보조금 교부 팀이 4일~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중간 사업 현황과 관리지침 취지에 따라 중간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을호 위원님께서는 시정 고민정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은 평생학습도시 사업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도개선으로 하되 정을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구체적인 시정요구사항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2개를 합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도개선으로 하되 시정요구사항은 병합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립국제교육원.

○**전문위원 윤상열** 국립국제교육원 관련해서는 R-GKS 장학생 관련해서 여기에 학위 취득 지원 플러스 지역 정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장학생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그리고 연번 83번은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관리용역비가 아닌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관리용역비로 집행되도록 개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82번 R-GKS 장학생 취업·정주 연계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83번 HURIK 유지보수 계약 예산 비목 변경 필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제도개선 다 수용하시는 것일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넘어가되 다만 한 가지 지적은 사업 요구에 영어를 너무 이렇게 많이 쓰지 마십시오. 이게 행정편의인데요. 이 HURIK, 휴리크라고 읽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투명성 차원에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올해 예산 만드실 때 한국어로 풀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약자 그다음에 애크러님(acronym) 들어가는 영어 사업 하지 마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고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불을 켜고 보겠습니다.

다음 24년 예비비 시정요구(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정책국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84연번입니다.

영유아보육료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 시 대비해서 실제 지원 아동 수가 증가해서 부족분을 연례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있습니다.

대상인원 추계 방법 현실화 등을 통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예비비 요구 시에도 실제 충당 내역을 반영한 산출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5연번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 역시 법령에 따른 경직성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 내용으로 인건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서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84번, 영유아보육료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입니다.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과거 복지부에 있을 때부터 이런 관례가 좀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되 이게 매년 제도개선 주의받고 시정요구만 하고 안 고쳐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까지만 제도개선 수용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넣어 주시고 관계 부처에도 알려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이것으로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마치고 부대의견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간단하겠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가 있다는 것 알려 드립니다. 그럼에도 1시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교육부 의견 제시 내용 다들 받으셨나요?

부대의견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부대의견도 설명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 연번 2번 사항을 미반영하는 대신에 부대의견을 부처에서 제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서술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고, 부대의견 2번·4번·6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또 문구 수정 의견을 지금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사항으로 부대의견에 있는 세 번째 항목과 여덟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요구사항의 취지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랑 지방재정교부금상의 정산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 부분을 시정요구사항과 별도로 부대의견으로 또 반영하실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추가된 내용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부처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박성준 위원님 질의사항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부는 역사 관련 기관장들이 역사적·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기적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한다’ 이렇게 부처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부대의견 8개 중에서 교육부는 2번·4번·6번에 대해서 부대의견 들어가는 것에는 수용합니다마는 약간 문구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먼저 2번에 대해서 원안은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의 증가를 고려하여 다문화언어 강사 등 특수외국어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다문화교육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한다’. 김용태 위원님 지적 사항 수정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문화교육이라는 말을 요새는 교육부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이주배경 학생이라고 쓰고 있어서 또 앞에는 이주배경학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 관련 요건은 좀 빼 주셔도 문맥은 이어집니다. ‘이주배경학생의 증가를 고려하여 다문화언어 강사 등 특수외국어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다문화교육 관련 다문화교육만……

○소위원장 조정훈 이해했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어찌십니까?

○김용태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수용했습니다.

4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면 4번입니다.

이것도 원안은, 하단만 읽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에듀테크 발굴은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교육부는 중앙만이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에듀테크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같은 뜻인데요 교육청에 책무를 주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6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원안은 ‘교육부는 부처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초중등 사교육비 총액이 수년간 목표를 미달하고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 제출 시 해당 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미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교육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만 좀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교육 관련해서 교육부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위원장 조정훈 이해했고요.

실장님, 제가 수정 제안드리면 ‘사후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과거 책임성 표현은 빼겠습니다만 ‘교육부는 부처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초중등 사교육비 총액이 수년간 목표를 미달하고 있으므로 2026년 본예산 제출 시’ 이것은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9월 2일까지 본예산 제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축박해서……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국회 예산심의 전까지 그것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2026년 국회 예산심의 전까지, 제가 교육위 예결위원장이기도 하지

만 예결특위 소위원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해도 되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과 교육부가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 결과는 변상은 없고, 정계는 없고, 시정 8건, 주의 6건, 제도개선 68건으로, 총 8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였고 교육부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수정한 것과 같이 첨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입장이나 제안이 없으시면 의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등에 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교위 준비되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소위원장 조정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해서는 총 7개의 시정요구사항과 1개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공무 전용 차량의 사적 사용과 복무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원장 복무관리 부적정이 지적되어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량 사용 및 툴게이트 비용 등 환수 조치가 필요하고, 위원장의 복무관리에서 부적정이 지적되었으므로 해당 일수에 대한 보수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연번 2번은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국민동의 요건을 낮추는 등 방안을 강구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연번 3번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참여 위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회의 참여 의사가 큰 국민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주의할 것과 같은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연번 4번은 국가교육 모니터링단 활동과 관련해서 활동의 결과가 정기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연번 5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 국민의견 수렴도 기대에 못 미치는 등 핵심사무 및 주요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요 사무가 취지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체계 등에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연번 6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이 충분한 합의와 의견수렴 없이 비공개 회의에서 확정·발표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이 편향적·폐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하고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의견입니다.

연번 7번은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5건은 제한경쟁 나머지 22건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지적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개선대책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은 ‘국민참여위원회의 활성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앞의 시정요구사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국교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첫 번째, 국가교육위원장 보수 등 환수 조치 필요와 관련해서는 박성준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은 차량 사용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겸직 업무 수행과 이에 따른 공무 전용 차량 사용에 대해 개인 용도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종결된 사안으로 환수 조치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무관리 관련해서는 근무 상황 기록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처분만 받고 환수 조치 통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시정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 부진 관리 필요와 관련해서는 고민정 위원님께서는 주의 김용태·정을호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인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국민참여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관리 필요에 있어서 고민정 위원님은 주의 김문수·김용태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시정요구사항으로 하셨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활동 미흡 관리 필요와 관련해서는 고민정·조정훈 위원님은 주의 정을호 위원님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가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핵심사무 및 주요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필요에 있어서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교육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필요와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원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의견 등을 경청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므로 백승아 위원님의 시정으로 된 요구사항은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곱 번째, 정책연구용역 계약 방식 개선 필요. 저희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로 진행하였으며 단일응찰 또는 무응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백승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제도개선을 저희는 불수용으로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사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부 같은 경우는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요청하실 때 그 이유를 말씀을 주셔서 좀 납득이 가는 면이 있었거든요. 차후 연도 예산은 이렇게 고쳤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바꿔 달라고만 하시니까 왜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따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소위원장 조정훈**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보수 등 환수 조치 필요에 대해서 박성준 위원님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내용은 환수 조치니까 어떻게 보면 시정이십니다. 입장을 설명……

○**박성준 위원** 환수 조치를 빼주고, 제외하고 제도개선하라고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환수 조치 빼고.

○**박성준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공무 전용 차량 사용 등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엄격한 규정을 만든다 정도로 제도개선 어떠십니까? 환수 조치는 삭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환수 조치를 제외하는 식으로 해서……

○**소위원장 조정훈** 환수 조치 제외한 제도개선은 나쁘지 않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시정요구사항 내용에서 환수 조치는 빼고 공무 전용 차량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2번,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 부진 관리 필요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주의·제도개선인데 일반적으로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같은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이니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활동 미흡 관리 필요인데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것 조금 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내용은 병합해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은 수용 가능 하셨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6번, 민주적 운영 필요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제도개선으로 요청하신 근거.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의견 등을 경청해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인데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1차 안이 전체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되었고요. 현재 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전문위원회하고 같이 긴밀하게 국교위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발표될 수 있는 시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가 총 21명인데요. 이 중에서 현직 교원이 3명, 전직 교원이 2명으로 구성돼서 교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 하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국교위가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들어 보면 그냥 노력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길게 하신 거잖아요?

국교위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어떤 안건을 다뤘는지 제대로 회의록 공개도 안 됐고, 그때 카톡 유출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도 국교위에서 설문조사했던, 국민의견을 수렴했던 의견과 거의 반대되는 내용들이 그 전문위원 회의에서 언급이 됐었고, 교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었는데 절차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안까지 발의를 했어요, 회의록 공개하는. 솔직히 회의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공개는 당연히 지금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그냥 ‘우리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앞으로 노력할 거니까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 이것 너무 논리가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조금 뻔뻔하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교위 위원 중에 지금 교사가 둘이지요? 둘인데 그것도 한 분이 더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됐고, 계속 교총만 있다가.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백승아 위원** 그런 상황에서 뭐가 얼마나 다양하게 교원 의견이 수렴됐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동안 노력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출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라고 그 한마디 가지고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요청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저희가 회의록과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상세한 회의록을, 거의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으로 공개를 하라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아주 상세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토의되는 내용들이 점점 많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백승아 위원** 어떻게 어느 대상에게 공개가 되나요? 국민들이 요청하면 다 공개되나

요?

-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홈페이지에 가면……
- 백승아 위원**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신가요?
-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 백승아 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게시한 지도 꽤 상당히 됐습니다.
- 백승아 위원** 꽤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회의록은 처음부터 공개가 됐지만 회의록의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게끔 한 건……
- 백승아 위원** 기억나네요. 제가 그 회의록 내용 보고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나네요.
-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래서 그것 다 공개를 하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실 때는 우리가 실명까지 적어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 백승아 위원** 언제부터 공개하셨냐고요.
-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처음부터……
- 백승아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자세히 공개 안 하셨잖아요? 제가 최근 회의록을 못 봤는데 기존에 공개했던 내용 다 봤는데 그것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초기에는 그랬었지요.
- 백승아 위원** 그때 그렇게 하셔 놓고 ‘이제 우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국회에서 지적이 나온 이후로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회의록 기술 방식을 바꿔 가면서 계속 요구……
- 백승아 위원** 개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예. 개선하고 있고 1차부터, 추후 시정조치 이후에는 보완된 회의록도 추가로 첨부해 가지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 백승아 위원** 제가 최근 건 잘 못 봤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제도개선은 솔직히 수용이 안 돼요. 주의로 가시지요.
-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위원하고 국교위가, 국교위는 저희들이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전문위원들은 저희들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20명 중에서 5명이 현장에 계셨던 교사 선생님들이라서요 현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청취를 해서 전문위원들이 지금 발전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백승아 위원** 이전과는 다르게 노력하고 있다는 면이 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백승아 위원님의 제안은 백번 맞지요. 그리고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취지는 제도개선과, 뭐라 그럴까, 제가 지금 적용 기준을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는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의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

서 더 중요한 건 회의록의 상세한 공개나 또는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라라는 절차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부터 인적 구성이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의 또는 제도개선은 새 지도부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과 영향력을 미칠 테니까 정말 머리를 모으셔서 어떡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합의 정신에 기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주의를 수용하실지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실지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생각만큼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적받은 부분 또 우리들끼리 논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혼날 만큼 혼나신 것 같은데. 이제 임기도 마감하시는데 그냥 제도개선 어떠세요?

○**백승아 위원** 안 혼내고 주의로, 이것은 남겨 놔야 돼요.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저희가 추후에도 회의록을 계속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보완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남은 위원 위촉 관련해서도 교원 관련……

○**백승아 위원** 주의로 남겨 두시고 추후에 새로 오실…… 여기 주의가 그렇게 써 있네요. 유형별 적용 기준에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 받으셔야 돼요, 국교위 책임자님.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백승아 위원** 사건도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국교위에서 설문조사했던 거랑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다뤘던 카톡,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출된 그 내용들도 그렇고 뭔가 좀 더 합의하고 공개하는 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요. 거기에서 주의 받으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백승아 위원님, 실은 제가 언급은 안 하려고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국교위 운영에 관한 문제 지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예산 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결산함에 있어서 예산 운용에 관한 개선사항 등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다 했지 않습니까? 뭐 얼마를 어디다 썼다, 짐행률이 낮다, 이게 우리 시정사항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백 위원님 요청은 실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예결위의 시정사항으로 적절한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번 나오는 그건 충분히 맞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한 것 이건 예산 결산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제도개선으로 놓고 기록에 남기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백승아 위원** 어떻게, 주의 받기가 싫으세요?

○**소위원장 조정훈** 이제 나가시는데……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주의가 됐든 제도개선이 됐든 저는 일단 나가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소위원장 조정훈** 공무원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 주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시니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사항들 공개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국교위에서 설문조사하고 이랬던 내용들에 반하는 내용들로하시는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지켜보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유연성을 발휘해 주신 백승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7번, 제도개선 불수용하셨는데 실은 이건 사실확인을 해서 정책연구용역 27건 모두를 일단은 공개입찰을 붙이신 겁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결과적으로 입찰을 안 했다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 사실관계는 확실한 거지요?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워낙 나가는 주제가 굉장히 방대하고, 예를 들어서 직업평생교육……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관계없고 27건 모두 공개입찰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지금 여기 27건의 카운트되는 숫자가 아마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그중에 2000만 원 이하 소액은 수의계약이고요 그것 외에는 공개입찰을 했고, 공개입찰된 것에 대해서 1건이 들어온 경우에 무응찰이 돼서 일주일 동안 다시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유찰된 경우에 한해서 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27건 중에 수의계약이 몇 건입니까, 2000만 원 이하로 수의 계약하신 건?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한 것은 22년도 9월에 출범하고 나서부터 쭉 계산을 하면 22년도 말에 3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3년도부터는 2건 정도 있고요, 24년도 초에 1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틀 잡을 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2000만 원 이하 소액을 그렇게 한 거고요. 대부분은 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단건만 들어와서 유찰이 돼서 재공고를 하고 이후에 응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좀 많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제한경쟁이라고 넣은 것은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넣은 게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입찰 자격 등록 등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제한경쟁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27건 중에 수의계약이 지금 몇 건인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저희가 전체가 22년에 3건, 23년에 17건, 24년에 18건, 25년에 8건으로 이 27건의 숫자가 나온 게 약간 저희 기록이랑 달라 가지고 어느 숫자를 카운팅해 가지고 이것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체……

○**소위원장 조정훈** 갖고 있는 통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가지고 있는 48건 중에 수의계약으로 된 것은 7건입니다, 2000만 원 이하.

○**백승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27건 중에 5건이 제한경쟁,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발주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그 수의계약이 아마 공개입찰을 했는데 1건만 들어와서 더 이상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되고 다시 재공고했는데도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백승아 위원**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되네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백 위원님, 제도개선은 제외하고 부대의견에 넣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위원님 취지를 굉장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신생 기관이고 나가는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 등이나 여러 홍보 노력을 해서 많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궁금한 게 제한경쟁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반경쟁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보통 학술 연구용역에는 학술 연구용역 입찰 자격 등록 등으로 이렇게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견 조건이 일반적인 정책연구에 비해서 더 추가로 장벽을 올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부대의견에 좀 더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자꾸 유찰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좀 넣어 주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요. 저도 예전에 정부기관에 있을 때 이런 용역을 해 봐서 내용은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수의계약한 연구기관이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 권민경**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2년 출범하고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정책학회 그다음에 서강대 산학협력단 이렇게 다 기관은 다릅니다.

○**김준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상임위원님께서는 이제 곧 나가실 건데 발표는 어쨌든 상임위원님 뜻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불수용 말씀을 하시는데 불수용을 대놓고, 지금처럼 과장님처럼 설명을 하시고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내용인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그런 납득된 설명이 없이 ‘불수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 상임위원님은 나가시겠지만 나머지 뒤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국회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말을 많이 하거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아마 상임위원님께서 대학에서 부총장까지 하시면서 여러 처장이나 부총장 하시면서 지시하는 일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이런 언어의 구사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남은 국교위 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교위에 보좌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시지요? 사무처장님 잘못이 큰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최수진**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정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건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김태준** 하여튼 제 불찰이고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준혁 위원** 그렇게 써 준 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김태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을 달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세요. 교육부는 사전 설명을 좀 주셨었거든요.

○**소위원장 조정훈** 신생 기관이니까 점점 익숙해지리라고 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국교위 결산을 하고 나니 결론적으로 제도개선 6건 그리고 부대의견 1건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1건은 오해가 없으시기 위해서 김용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민참여 위원회 활성화 및 역할 강화를 노력한다는……

○**김용태 위원** 앞에 있어서……

○**소위원장 조정훈** 예,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백승아 위원님 제안하신 민주적 운영에 관한 문구를 부대의견으로……

○**백승아 위원** 수의계약.

○**소위원장 조정훈**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경쟁입찰을 하도록 더 노력한다’ 정도로 자구 조정을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요.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내용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교위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강경숙 김대식 김문수 김용태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이혜진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김주영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김태준

사무처장 최수진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장 이동현